

처분통지서

(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) 공시송달

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및 부칙 제5조, 「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43조에 따라 당사자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처분을 통지하였으나, 법인의 본점 사무실, 지점 사무실 및 대표이사 자택에 대해 수취인불명, 이사,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5. 4.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처분의 제목	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	
당사자	성명(명칭)	주식회사 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(대표이사 김용석)
	주 소	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80번길 6-11, 205호 (초량동)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1. 2019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정기검사에 따른 시정명령(임직원 대출한도 초과 시정, 2020.1.23.)에 대하여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미해소 2. 2021년 2월 수시검사에서 소재지 방문 시 장기간 폐문부재, 이사 추정 등 사실상 사무실 미운영, 근무 중인 임직원 없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요건 미충족 3. 위 1~2에 근거 당사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,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처분을 사전통지(공시송달)하고 청문을 개최(2021.4.1.)하였으나 이에 불참하는 등 그 시정의지를 밝히지 않음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당사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(등록취소일 : 2021.4.23.)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[시행 2020.8.12.] [법률 제16998호] ①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2.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	

3. 제37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
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2항 [시행 2020.8.12.] [법률 제16998호]

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

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3조제7항 [시행 2020.8.12.] [대통령령 제30934호]

⑦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. (후략)

2. 투자 업무를 위한 전용공간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을 갖출 것

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5조제2항 <법률 제16998호, 2020.2.11.>

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등록 취소, 업무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및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다.

「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43조제1항 [시행 2019.6.12.] [법률 제15927호]

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5. 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의무를 위반한 때

「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15조제1항 [시행 2019.6.12.] [법률 제15927호]

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5. 그 밖에 설립 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「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10조제4항 [시행 2019.6.12.] [대통령령 제29851호]

④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”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4.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

「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」 제8조제1항 [시행 2019.5.14.] [중소벤처기업부령 제14호]

① 영 제10조제4항제4호에서 “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금액” 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.

처분담당자	기관명	중소벤처 기업부	부서명	투자회수 관리과	담당자	윤민지
	주소	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			전화번호	042-481-4420
	전자우편 주소	myjoy92@korea.kr			팩스번호	-

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및 부칙 제5조, 「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합니다.

2021년 4월 23일

< 알 립 사 항 >

1.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2항제2호아목에 따라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원이었던 사람(대표이사, 감사, 등록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지시한 자)은 등록취소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.
2.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3.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,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(서면 또는 온라인)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4.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, 온라인 행정심판(www.simpan.go.kr)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붙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공고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-256호). 1부. 끝.